

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2 세움터(www.eais.go.kr)에서도
1. 7. 12.>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건축물대장의 분리·결합신청서

• 어두운 난(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일	처리기간	7일
소유자	성명(명칭)			
	주민등록번호(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)			
	주소			
구 분		(변경)전 내용	(변경)후 내용	사유
분리	대지위치 (건축물명칭)			
결합	대지위치 (건축물명칭)			

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분리·결합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	1. 건축물현황도(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제출서류	2. 현황측량성과도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,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)	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토지 등기사항증명서	